Sunshine GWANGYANG

광 양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시 보

제43호 2026. 10. 28(수)

고 시

광양시 고시 제2026-274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 고시 ····· 1
광양시 고시 제2026-27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····· 2
광양시 고시 제2026-27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····· 3
광양시 고시 제2026-284호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개별 고시 ····· 4

공 고

광양시 공고 제2026-2253호 공시송달공고 ····· 5
광양시 공고 제2026-2255호 공시송달공고 ····· 7
광양시 공고 제2026-2267호 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,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 허가 고시(공고) ····· 9
광양시 공고 제2026-2287호 도로구역 결정(변경) 주민의견 청취 공고 ····· 10

회람										

▶ 발행 : 광양시 ▶ 편집 : 홍보소통실 (☎797-2713, 행정2713)

광양시 고시 제2026 - 274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10월 28일

광 양 시 장

▣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내역

승인번호 및 연월일	목 적	장 소	면 적	기 간	피 승인자	
					주 소	성명
2026-7 (2026. 10. 28.)	태인동 도촌포구 물양장 내 어업용 간이작업장	광양시 태인동 1319-1번지 인근 공유수면(물양장)	216㎡	허가일로부터 5년	광양시 태인동	태인어촌계

광양시 고시 제2026-275호

하천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10월 28일

광 양 시 장

가. 허가내용

하천의 명칭		추산천(지방하천)
점용자	주소	광양시 옥룡면 백계로 ＊＊＊
	성명	나○○
점용지역	위치	옥룡면 추산리 1494 번지 일원
	면적	약 46㎡
점용목적		공작물 설치
점용내용		단독주택(농어촌 민박) 진출입로
점용기간		당초: 2010. 5. 25. ~ 2026. 12. 31. 연장: 2027. 1. 1. ~ 2031. 12. 31.

나. 관계도서는 광양시청(건설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(☎061-797-273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광양시 고시 제2026-277호

하천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10월 28일

광 양 시 장

가. 허가내용

하천의 명칭		구상천(지방하천)
점용자	주소	광양시 봉강면 매천1길 **-*
	성명	김○○
점용지역	위치	봉강면 석사리 1170-36 일원
	면적	약 77㎡
점용목적		토지의 점용
점용내용		농작물 경작
점용기간		당초: 2021. 1. 20. ~ 2026. 12. 31. 연장: 2027. 1. 1. ~ 2031. 12. 31.

나. 관계도서는 광양시청(건설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(☎061-797-273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광양시 고시 제 2026 - 284호

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개별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10. 28.

광 양 시 장

○ 도로명주소

구 분	고 시 대 상	고시조서	비 고
도로명주소 (건물번호) 부여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당3길 12 외 6건	별지참조	
	아 래 빈 칸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(☎797-3388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6. 10. 28. 고시 후「도로명주소법」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「도로명주소법」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광양시 공고 제2026 - 2253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『건축법』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“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최종 조치 요청”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6년 10월 22일

광 양 시 장

1. 공 고 명 :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최종 조치 요청 공시송달 공고

2. 공고기간 : 2026. 10. 28. ~ 2026. 11. 12.(15일간)

3. 공고장소 : 광양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
4. 공시송달 내용

가. 처분의 제목: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최종 조치 요청
나.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: 아래 참조
다. 법적근거 및 조문 :「건축법」 제79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

건 축 물 소 재 지	처 분 원 인 (위 반 내 용)	처분내용	처분 당사자	반 송 주 소	반송사유
광양시 마동 1576-1번지 외 3필지	**「건축법」 제19조 위반** 가. 지하1층 판매시설(상점)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77.89㎡	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최종 조치 요청	박O순	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조례1길 60,10*동 ***호(조례동 남양휴튼)	폐문 부재 등
	「건축법」 제14조 위반 ‘가’ 지하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(소매점) 철파이프조 9.6㎡ ‘나’ 지상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(소매점) 철파이프조 20㎡ **「건축물관리법」 제30조 위반** ‘다’ 지하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(소매점)주요구조부(내력벽)일부철거 4.4㎡	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최종 조치 요청	정O영		

5. 유의사항

○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과(☎061)797-288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22. 7. 11.>

의 견 제 출 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의견제출인</td><td colspan="2">성명</td></tr>
<tr><td>주소</td><td>전화번호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의견제출
내용</td><td colspan="2">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당사자</td><td>성명(명칭)</td></tr>
<tr><td>주소
(전화번호:)</td></tr>
<tr><td>의 견</td><td></td></tr>
<tr><td>기 타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 의 사 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광양시 공고 제2026 - 2255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『건축법』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“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”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6년 10월 22일

광 양 시 장

1. 공 고 명 :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시송달 공고

2. 공고기간 : 2026. 10. 28. ~ 2026. 11. 12.(15일간)

3. 공고장소 : 광양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
4. 공시송달 내용

가. 처분의 제목: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

나.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: 아래 참조

다. 법적근거 및 조문 : 「건축법」 제79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

건 축 물 소 재 지	처 분 원 인 (위 반 내 용)	처분내용	처분 당사자	반 송 주 소	반송사유
광양시 중동 1576-1번지	**「건축법」 제14조 위반** 가. 창고시설 컨테이너조 2층 18㎡	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	설O종	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남가1길 **	폐문 부재 등

5. 유의사항

○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과(☎061)797-288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22. 7. 11.>

의 견 제 출 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의견제출인</td><td colspan="2">성명</td></tr>
<tr><td>주소</td><td>전화번호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의견제출
내용</td><td colspan="2">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당사자</td><td>성명(명칭)</td></tr>
<tr><td>주소
(전화번호:)</td></tr>
<tr><td>의 견</td><td></td></tr>
<tr><td>기 타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 의 사 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■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2호서식] <개정 2016. 9. 8.>

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,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 허가 고시(공고)

공고 제2026-2267호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10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(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28일

광 양 시 장

시행자 (점용·사용자)	상호 및 명칭	서○○			
	대표자 (성 명)	서○○	주소	광양시 옥룡면 대흥1길 * *-*	
소하천명		대방천			
공사 (점용·사용) 개요	위치	옥룡면 용곡리 1567 번지 일원			
	면적	약 250㎡	폐천부지(廢川敷地) 예상 면적		㎡
	기간	당초: 2021. 5. 17. ~ 2026. 12. 31. 연장: 2027. 1. 1. ~ 2031. 12. 31.			
	목적 및 사유	토지의 점용(농작물 경작)			

열람서류

1. 실시설계도서
2. 위치도(축척 5만분의 1 지형도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광양시 공고 제2026 - 2287호

도로구역 결정(변경) 주민의견 청취 공고

“국도2호선 광양 세승교차로 개선사업”에 대하여 「도로법」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28일

광양시장

1. 사 업 명 : 국도2호선 광양 세승교차로 개선사업

2. 도로구역결정사유 : 국도2호선 광양 세승교차로 개선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

3. 사업시행 위치 및 면적

○ 위 치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1237-1 ~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403-7 일원

○ 사업면적 : (당초) 55,001㎡ (광양시 : 37,974㎡, 순천시 : 17,027㎡)
(변경) 54,824㎡ (광양시 : 37,752㎡, 순천시 : 17,072㎡)

4. 사 업 량 : ○연장 : L=1.372㎞, 노선폭 : 1차로(B=7.0m), 2차로(B=13.5m)

5. 시 행 자 :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

6. 사업기간 : 2026년 07월 28 ~ 2030년 07월 26일
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, 위치도 및 관계도서 : 공람장소 비치

8. 공람기간 및 장소

○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5일간 (2026. 10. 28. ~ 2026. 11. 12.)

○ 공람장소 : 광양시청 도로과

○ 의견서 제출처 : 광양시청 도로과(의견서 서식 비치)

9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로과(☎ 061-797-2825)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민의견 제출서

사 업 명	국도2호선 광양 세승교차로 개선사업	
위 치	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~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	
사업시행자	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	
의견제출자	**성명**	**생년월일**
	주소	**전화번호**
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		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제출자 : (서명 또는 인)

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